[별표 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실적 평가 매뉴얼(제8조제1항 관련)

Ⅰ. 평가개요

1. 목적

가. 자율관리어업은 기반조성 단계에서 본격적인 확산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보다 많은 공동체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성 대두

나. 자율관리어업 참여 정도와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동체등급 부여 및 육성사업비 지원 등 인센티브지원에 차등을 두기 위함

2. 평가대상

가. 전년도말 현재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모든 공동체에 대하여 전년 1. 1~12. 31까지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을 평가

3. 평가기관

가. 예비평가: 지자체 자율관리어업 전담기관,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수협, 내수면 평가협의체

나. 본 평가: 시도지사(지역협의회) 및 해양수산부(평가위원회)

Ⅱ. 기관별 평가내용

1.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수협 및 내수면평가협의체 평가(예비평가)

가. 평가원칙: 현장방문 없이 자체 확보 자료로 평가

※ 평가위원회 사무국(수탁기관)과 지자체 자율관리어업 전담기관에서 상호 협조

나. 평가대상: 전년도말 현재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모든 공동체

다. 평가시기: 연 1회(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

라. 평가항목: 4개 항목(참여 유형 구분 없음)

평가항목	내수면을 제외한 공동체		내수면공동체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수협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내수면평가협의체
대외활동 및 정부정책 참여	연합회 행사 참여(150)	수협 및 행정·공공기관 등 지원사업 참여(150)	연합회 행사 참여(150)	행정·공공기관 등 지원사업 참여(150)
주변파급	공동체간 행사 여부(150)	정책보험 가입 여부(150)	공동체간 행사 여부(150)	정책보험 가입 여부(150)
위원장 리더십 및 회원 결속력	단합행사 성과 (참여율)(100)	자체 신규사업 시행(100)	단합행사 성과 (참여율)(100)	자체 신규사업 시행(100)
협의평가	정성평가 50점	정성평가 50점	정성평가 50점	정성평가 50점
가점	사회봉사 활동 실적(10점)	수상실적(10점)	사회봉사 활동 실적(10점)	수상실적(10점)
총점	450점 (가점 10점)	450점 (가점 10점)	450점 (가점 10점)	450점 (가점 10점)

마. 세부평가매뉴얼

평가항목	평가지침
대외활동 및 정부정책 참여	- 연합회 행사 참여: 참여 횟수에 따라 배점 · 2회 이상 참여 150점, 1회 참여 75점, 미참여 0점 - 수협, 행정·공공기관 등 지원사업 · 2회 이상 참여 150점, 1회 참여 75점, 미참여 0점 - 증빙자료: 활동일지, 행정·공공기관·수협·연합회·공동체 등 관련 실적 증빙 가능 문서(행사개최, 사업시행, 결과 보고서 등)
주변파급	- 공동체간 행사: 타 공동체와 행사·견학·지원 등 · 1회 이상 150점 - 정책보험 가입: 가입률에 따라 배점 · 공동체 구성원 50% 이상 가입 시 150점, 25% 이상 50% 미만 100점, 10% 이상 25% 미만 50점, 10% 미만 0점 - 증빙자료: 활동일지, 정책보험 가입 자료
위원장 리더십 및 회원 결속력	- 단합행사: 체육대회, 야유회 등 공동체 구성원 참여율 × 100점 · 1회 이상일 경우 참여율은 산술평균값 - 신규사업: 자체 사업 시행 100점 · 신규 추진시 100점, 미추진시 0점 - 증빙자료: 활동일지, 사업시행 관련 서류
협의평가	- 평가기관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공동체 활성화 정도, 노력도, 자율성 등을 평가위원 평가 후 산술평균으로 점수 부여(50점) · 탁월(50점), 우수(40점), 양호(30점), 보통(20점), 미흡(0점)
가점	- 수상 실적: 장관상 이상 10점, 시도지사상 6점, 시장·군수·구청장·지방청장·수협장(중앙회장포함)·연합회장상 등 4점, 최대 10점 만점 · 공동체 또는 공동체 회원의 수상 실적 합산 - 사회봉사 활동 실적: 공동체의 봉사활동, 사회 단체기부 등 실적 · 1건 5점, 2건 이상 10점(만점) - 증빙자료: 수상내역(상장, 표창장 등) 사본, 공동체 활동 일지

바. 평가방법: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및 수협중앙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 및 내수면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평가하고 <붙임 2> 평가결과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연합회평가위원은 관할 참여 공동체 수의 10% 범위에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이 지명(최소 3명 이상, 최대 10명 이하)

○ 수협중앙회 업무담당 부서장은 연합회와 동수의 위원을 추천한다.

○ "내수면평가협의체"는 평가위원회 사무국에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 구성은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학계, 연구소 등 5인 이내로 한다.

※ 내수면공동체의 평가자료는 관할 지자체에서 취합하여 평가위원회 사무국(수탁기관)으로 제출한다(3.15까지)

사. 평가절차: 지역별 평가단 구성 및 평가위원회 개최(1~2월) → 전산입력 완료(3.15까지)

아. 평가비율: 전체평가의 30% 적용

2. 지자체(자율관리어업 전담기관) 전자평가(예비평가)

가. 평가원칙: 규약 확인 및 현장 점검은 기본

나. 평가대상: 전년도말 현재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한 모든 공동체

다. 평가시기

○ 노력도: 반기 1회(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참여도, 성과도, 지속도, 파급도: 연 1회(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라. 평가항목

구 분	마을어업		양식어업		어선어업		내수면어업		복합어업	
	문항	평점	문항	평점	문항	평점	문항	평점	문항	평점
합 계	22	1,000	18	1,000	22	1,000	21	1,000	25	1,000
노력도	14	650	10	650	14	650	13	650	17	650
참여도	1	100	1	100	1	100	1	100	1	100
성과도	2	100	2	100	2	100	2	100	2	100
지속도	3	100	3	100	3	100	3	100	3	100
파급도	2	50	2	50	2	50	2	50	2	50

※ 참여 유형별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 평가 매뉴얼 참조

마. 평가방법

○ 세부 평가 매뉴얼을 참조하여 평가

○ 평가항목별로 객관적인 확인서류에 근거하여 평점 부여

<전자평가시 확인 서류>

기본 확인사항	추가 확인 서류(1개 이상 확인)	비고
규약 확인 및 현장 청취조사	①회의록 ②사진 ③회계서류 ④행정관청 확인서 ⑤수협 확인서 ⑥활동일지	

※ 추가확인서류는 평가항목별로 세부항목별 평가매뉴얼에 구체적으로 밝힌 서류에 한정해서 평가

바. 평가절차: 평가항목별 근거서류 확보 → 반기 평가(반기 종료후 2개월 이내) → 연간 평가 완료(2. 28까지)

사. 평가비율: 전체평가의 70% 적용

3. 시도 지역협의회(본 평가)

가. 평가대상

○ 전년도말 현재 선정된 모든 등급별 공동체

나. 평가시기: 매년 4~5월

다.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평가대상 공동체에 대하여 행정공부 확인,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등 의견 청취 및 필요시 현지 확인

○ 행정공부 등의 확인을 거친 후 최종점수 확정(행정공부 확인 등으로 결격사유 확인 시 점수 조정가능하며 조정사유 반드시 첨부)

라. 평가절차: 평가대상 공동체 확정(3월) → 행정공부 확인 및 의견 청취 등(4월) → 최종점수 결정(5월)

마. 결과조치: 전체 공동체에 대한 최종점수 결과 보고 및 우수공동체 추천(5월)

○ 우수공동체는 모범공동체 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체 중에서 활동실적이 특별히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공동체를 말하며, 시도별 1~2개 범위에서 추천

* 추천양식은「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참조

4. 자율관리어업평가위원회(본평가)

가. 평가대상

○ 시도에서 추천된 우수공동체 및 전년도말 현재 참여한 모든 공동체

나. 평가시기: 매년 6~7월

다.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 평가대상 공동체에 대하여 현지 확인 점검 실시(시도에서 추천된 우수공동체 및 모범공동체 중 상위 20% 이내 공동체)

○ 점검결과에 따라 시도에서 추천된 우수공동체 중 우수공동체 선정 및 공동체 등급, 순위 결정(해당 선정에서 제외된 공동체는 시도 지역협의회 평가점수 유지)

※ 현지점검 등 평가위원회 운영은 수탁기관이 사무국 역할 수행

라. 평가절차: 평가대상 공동체 확정(6.15까지) → 현장 확인·검증 (6~7월) → 최종 순위 결정(7월말까지)

Ⅲ. 지자체 전자평가

1. 기본방향

가. 반기평가와 연간평가 구분

○ 평가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5개 분야를 반기평가(노력도)와 연간평가(참여도, 성과도, 지속도, 파급도)로 구분함

○ 반기평가는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산 입력함(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전산 입력 불가)

○ 연간평가는 노력도에 대한 하반기 평가 시 함께 평가하되,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1년간(1. 1~12. 31)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전산 입력함(해당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전산 입력 불가)

나. 평가대상 공동체 및 참여 유형 구분

○ 평가대상 공동체: 해당 반기말(하반기는 12월말) 현재 참여 공동체

○ 공동체 참여 유형 구분: 마을, 어선, 양식, 내수면, 복합어업(5개 유형)

- 참여 유형은 해당 연도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는 변경 불가

○ 공동체 참여 유형 구분은 반드시 수산정보통합시스템(https://int.fips.go.kr)의 평가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공동체의 참여 유형으로 평가해야 함(임의 변경 불가)

- 참여 유형은 매년 1회 시군구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변경 가능(시군구 지역협의회에서는 참여유형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통보해야 평가시스템상 변경 가능)

- 참여 유형의 변경은 해당 연도 상반기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반기 평가가 시작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연도 평가부터 적용

<참여 공동체 유형 구분>

유 형	변경 유형에 따른 유형별 개념
마을어업	- 어촌계 소유/간석지 패류양식(바지락, 가무락 등)
어선어업	- 어선어업 관련 협회, 단체 등의 자생 단체 중심
양식어업	- 수하식, 가두리 등 특정 시설 이용한 양식어업에 한정 - 기존의 굴, 전복 등 살포식 어업은 마을어업으로 분류
내수면어업	- 내수면에서 실시하는 모든 어업 (마을, 어선, 양식, 복합 구분 없음)
복합어업	- 마을어업에서 어선어업자들의 참여 비중을 고려하여 구분

※ 공동체 구성원 수에 따른 복합어업 기준: [별표 1] 참조

2. 평가방법

가. 평가 순서

○ 먼저 평가하려는 연도와 반기, 연도와 날짜를 선택한 다음 '조회' 버튼을 눌러 기존에 평가한 내용을 조회한다.

- 날짜는 당일 시스템 날짜가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확인

※ 참여 유형은 자동적으로 표시되며, 평가 대상 공동체의 참여 유형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만 시스템에 표시됨

○ 현재 화면의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누른 후 '다음' 또는 '이전' 화면으로 이동한다.

※ '저장' 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 또는 '다음' 버튼을 누르면 해당 화면의 입력 내용은 저장되지 않음

○ 이미 평가한 항목은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다. 단, 해당 반기 또는 해당 연도 평가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 수정하려는 연도와 반기, 연도와 날짜를 선택한 다음 '조회' 버튼을 눌러 기존에 평가한 내용을 조회하면, 화면 하단에 평가담당

자가 평가한 날짜가 표시된다.

- 평가한 날짜 중 최종 일자를 선택하면 당시 평가내용 화면으로 바뀐다.
- 평가한 내용을 수정한 후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수정된 내용으로 최종 평가가 이루어진다.

○ 평가결과에 대한 전산입력은 지자체 자율관리어업 전담기관별로 전산입력 ID가 부여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 동일한 자율관리어업 전담기관 소속이라도 관할 소속의 공동체에 대한 전산입력과 평가결과에 대하여만 확인이 가능하다.

나. 반기별 평가(노력도)

확인서류 ➡ 사업실시 여부 ➡ 회원 참여율 ➡ 사업실적

□ 전자평가 확인서류(공통사항 ①)

○ 동 사항은 모든 평가항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각 평가항목별 활동실적 평가 시 확인한 모든 항목에 ☑ 클릭한다.

- 1가지 이상 체크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평가항목은 점수가 반영되지 않음

□ 사업실시 여부(공통사항 ②)

○ 본 사항은 각 평가항목별 활동실적 실시 여부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 평가항목별 활동실적은 '평가항목' 란에서 사업실시 항목에 한정하

여 체크(ex, 어선감척 여부: ☑) 함과 동시에 '추가 입력사항'(예, 아니오)의 '예' 부분에도 체크해야 한다. (사업실시 항목이 모두 해당되면 모두 체크)

* 해당 사업의 실시 여부를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입력사항'의 '아니오'는 체크할 필요가 없음

○ '평가항목' 란의 사업실시 항목 체크와 동시에 추가 입력사항을 요구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도 함께 입력해야 점수가 부여된다.

ex) '4. 수익 확대사업 추진 - 가. 생산물 판매망 구축'의 경우에는 '구축여부'란 체크(☑)와 동시에 '구축내용'에 대하여도 함께 입력해야 함

□ 회원 참여율(공통사항 ③)

○ 본 사항은 각 평가항목별 회원 참여율 산정(算定) 시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 '현원 수'라 함은 평가대상 반기의 말일 기준, 해당 공동체의 회원명부에 등록된 전체 구성원 수를 말한다.

○ '참여수'라 함은 평가대상 반기 중 해당 사업을 실시할 때마다 참여한 공동체의 구성원 수를 합산한 누적인원 수를 말한다. 단, 누적인원 수가 현원 수를 초과할 경우 현원 수를 참여 수로 한다.

ex) '10. 3. 31 현재 현원 수 100명(공동체 전체 구성원 수), '10. 상반기 중 바위닦기 3회 실시(매회 50명 참석)의 경우 ⇒ 참여 수는 50명×3회 =150명이나, 현원수가 100명이므로 100명을 기입

□ 사업실적(공통사항 ④)

○ 각 항목별로 대상(생산액, 전체면적, 전체 품종수 등)의 입력을 요구하는 항목은 평가대상 반기의 말일 기준으로 입력한다.

○ 실적(판매액, 실시면적, 실시 품종수, 실시횟수, 물량, 금액 등)은 평가대상 반기 동안 발생한 누계 수치를 입력 또는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한다.

○ 실적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항목 중 자담분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담분에 대한 누계 수치만을 기입 또는 체크해야 한다. 다만, 실시횟수는 정부 또는 기관의 지원과 상관없이 모두 인정한다.

※ 자담: 평가대상 공동체가 자체 자금으로 투자한 금액을 말함

다. 연간 평가

참여도 ➡ 성과도 ➡ 지속도 ➡ 파급도

○ 연간 평가의 각 항목에 대하여도 연간 활동실적 평가 시 확인한 모든 항목에 클릭(☑)한다.

- 1가지 이상 체크하지 않으면 해당하는 평가항목은 점수가 반영되지 않음

○ 연간 평가는 노력도에 대한 하반기 평가 시 평가 대상 공동체의 연간 활동실적(1. 1~12. 31)을 종합하여 참여도, 성과도, 지속도, 파급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3.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 가 항 목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
1년간 총점수	**1,000**	**1,000**	**1,000**	**1,000**	**1,000**
Ⅰ. 노력도(반기 1회 평가)	**650**	**650**	**650**	**650**	**650**
1. 자원관리사업	190	100	280	190	220
가. 어획능력 삭감 노력	-	-	100	50	50
나. 포획·채취 체장(몸길이) 제한	20	-	40	40	40
다. 조업금지기간 확대	20	-	40	40	40
라. 어장휴식 실시	100	100	-	-	40
마. TAC등 생산량 규제	50	-	100	60	50
2. 어장환경 조성사업	**250**	**400**	**160**	**200**	**250**
가. 투석, 해중림, 어소 등 산란장조성	50	-	-	50	50
나. 바위닦기, 저질개선 등	100	100	-	-	50
다. 해적생물 구제	50	100	60	100	50
라. 어장청소사업	50	100	50	50	50
마. 친환경 수산 육성	-	100	50	-	50
3. 자원조성사업	**80**	**-**	**40**	**40**	**30**
가. 수산종자 방류, 이식	80	-	40	40	30
4. 수익 확대사업	**90**	**90**	**90**	**180**	**90**
가. 공동판매, 계통출하	30	30	30	60	30
나. 생산물 판매망 구축	30	30	30	60	30
다. 자체상품 품질개선	30	30	30	60	30
5. 자율관리공동체 교육	**40**	**60**	**40**	**40**	**40**
가. 공동체 주관 교육	20	30	20	20	20
나. 행정기관 등 주관 교육 참여	20	30	20	20	20
6. 어선안전관리	**-**	**-**	**40**	**-**	**20**
가. 어선안전운항 노력	-	-	40	-	20
Ⅱ. 참여도(연 1회 평가)	**100**	**100**	**100**	**100**	**100**
1. 공동체 참여자수	100	100	100	100	100
Ⅲ. 성과도(연 1회 평가)	**100**	**100**	**100**	**100**	**100**
1.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40	40	40	40	40
2. 공동체 연 수입액 증가율	60	60	60	60	60
Ⅳ. 지속도(연 1회 평가)	**100**	**100**	**100**	**100**	**100**
1. 귀어업인 구성원 수	50	50	50	50	50
2. 구성원 수산관계법령 준수 여부	30	30	30	30	30
3. 갈등 및 분쟁 해소 여부	20	20	20	20	20
Ⅴ. 파급도(연 1회 평가)	**50**	**50**	**50**	**50**	**50**
1. 견학장소 제공, 출강	30	30	30	30	30
2. 공동체 홍보	20	20	20	20	20

※ 세부 전자평가 매뉴얼: 별첨

4. 항목별 세부 평가 매뉴얼

<table>
<tr><th>평가항목</th><th>유형</th><th>평 가 지 침</th></tr>
<tr><td>Ⅰ. 노력도</td><td></td><td>반기 1회 평가</td></tr>
<tr><td>1. 자원관리사업</td><td></td><td></td></tr>
<tr><td>가. 어획능력 삭감 노력</td><td>어 선
내수면
복 합</td><td>□ 용어의 정의
o ‘어획능력’이란, 어선을 이용하여 조업행위를 할 때 어업별로 적법한 어구를 사용하거나, 특정 어구의 사용을 제한하여 어획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함
o ‘삭감 노력’이란, 인위적으로 어획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어선감척, 어구 수(길이) 축소, 망목(그물코의 크기) 확대, 특정 어구어법 사용 제한 등으로 어획량을 줄이는 것을 말함
o ‘어선감척’은 정부 지원에 의한 감척과 공동체 회원의 자체 감척을 모두 포함함
o ‘어구 수(길이) 축소’와 ‘망목 확대’는 수산관계 법령의 규정보다 강화하거나 규정이 없는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약에 반영하여 준수하고 있는 경우에 점수를 부여함
* 단, 수산관계 법령에 없는 사항은 전문 연구기관(과학원, 연구소 등)의 의견 또는 권고(다른 공동체에 의견 또는 권고한 내용도 포함, 이하 동일)가 있어야 하며, 법령이나 전문연구기관 의견 또는 권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약에 반영되어 있으면 한시적으로 인정함
□ 지표설명: 어획능력 삭감 노력 항목별 이행 여부를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회원 참여율(30%), 어획능력 삭감 노력(70%)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규약,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2개 이상 체크)
2. 실시 여부: ‘예’, ‘아니오’ 중 체크
3. 회원 참여율(배점 30%):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어획능력 삭감 노력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4. 어획능력 삭감 노력(배점 70%): 평가기간(상·하반기) 내 실시한 해당 항목에 √체크
o 어선 감척, 어구 수 축소, 망목 확대 활동 여부를 배점비율을 달리하여 평가함
* 체크 방식은 공통사항②를 참조하되, 해당 항목이 2개 이상일 경우 합산(배점 70%를 넘는 경우에도 최대 70%까지만 인정)
* 배점비율(상세)
<table>
<tr><td>어획능력 삭감 노력</td><td>배점 70%</td></tr>
<tr><td>어선 감척</td><td>배점비율 80%</td></tr>
<tr><td>어구 수 축소</td><td>배점비율 60%</td></tr>
<tr><td>망목 확대</td><td>배점비율 60%</td></tr>
</table>
※ ‘어선 감척’은 공동체 회원이 소유한 선박을 1척이라도 감척한 경우 점수 부여</td></tr>
</table>

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나. 포획·채취 체장 제한	마을어선 내수면 복합	□ 용어의 정의 ㅇ ‘포획·채취 체장 제한’이란, 자원관리를 목적으로 어획(포획, 채취, 생산)시 자율관리 대상 어종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어종별 포획·채취 체장 제한은 수산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보다 확대하거나 규정이 없는 대상어종의 체장 제한을 규약에 반영하여 준수하고 있는 것을 말함 * 단, 수산관계 법령 등에 없는 사항은 전문 연구기관(과학원, 연구소 등)의 의견 또는 권고(다른 공동체에 의견 또는 권고한 내용도 포함, 이하 동일)가 있어야 하며, 법령이나 전문연구기관 의견 또는 권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약에 반영되어 있으면 한시적으로 인정 □ 지표설명 ㅇ 수산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품종별 포획·채취 체장 제한 크기 보다 자율관리규약에서 자체 규정한 품종별 포획·채취 체장 제한 크기의 초과 비율을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회원 참여율(30%), 확대 크기(70%)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규약,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2개 이상 체크) 2. 실시 여부: ‘예’, ‘아니오’ 중 체크 3. 회원 참여율(배점 30%):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포획·채취 체장 제한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4. 확대 크기(배점 70%): 평가기간(상 · 하반기)내 실시한 해당 항목에 √ 체크 ㅇ공동체 자율관리규약 전체 대상 어종의 자체 설정 포획·채취 체장 제한 크기에서 수산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전체 포획·채취 체장 제한 크기를 제외한 크기로 배점비율을 달리하여 평가하며, 또한 공동체가 정한 수산관계법령 외의 자체설정 대상어종은 1종 당 배점비율 15%, 최대 4개까지만 인정함 * 체크 방식은 공통사항②를 참고하되, 수산관계법령有, 수산관계법령無 중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대상어종이 2개 이상일 경우 어종별 포획·채취 체장 제한 크기를 합산(배점 70%을 넘는 경우에도 최대 70%까지만 인정) *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를 단위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입력

<table>
<tr><th>평가항목</th><th>유형</th><th>평 가 지 침</th></tr>
<tr><td>나. 포획·채취 체장 제한</td><td>마을어선 내수면 복합</td><td>

* 배점비율(상세, 수산관계법령有)

자체설정 포획·채취 체장 제한 확대 크기	배점 70%
20cm 이상	배점비율 100%
15~20cm 미만	배점비율 80%
10~15cm 미만	배점비율 60%
5~10cm 미만	배점비율 40%
1~5cm 미만	배점비율 20%

* 배점비율(상세, 수산관계법령無)

자체설정 포획·채취 체장 어종 수	배점 70%
4개 이상	배점비율 60%
3개	배점비율 45%
2개	배점비율 30%
1개	배점비율 15%

□ 예시

ㅇ 확대 크기(70%)

- 수산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크기보다 초과(A어종 2cm, B어종 4cm, C어종 3cm)
- 법령에 없는 어종을 공동체 자체 규정(D어종 6cm, E어종 8cm)하여 준수하는 경우

⇒ {[수산관계법령有 5~10cm 미만(40%)×배점70%]+[수산관계법령無 2종(30%)×배점70%]}

※ 배점 40점인 경우 회원 참여율 점수 12점(30%), 확대 크기 점수 28점(70%)을 초과하더라도 참여율은 12점, 확대 크기는 28점까지만 인정

</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유형</th><th>평 가 지 침</th></tr>
<tr><td>다. 조업금지기간 확대</td><td>마을어선 내수면 복합</td><td>
□ 용어의 정의
ㅇ ‘조업금지기간 확대’란, 수산관계 법령에서 정한 개별 어종 및 업종의 조업금지 기간보다 확대하거나 규정이 없는 사항을 규약에 반영하여 준수하고 있는 것을 말함
* 단, 수산관계 법령에 없는 사항은 전문 연구기관(과학원, 연구소 등)의 의견 또는 권고(다른 공동체에 의견 또는 권고한 내용도 포함, 이하 동일)가 있어야 하며, 법령이나 전문연구기관 의견 또는 권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규약에 반영되어 있으면 한시적으로 인정
□ 지표설명
ㅇ 수산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개별 어종 및 업종의 조업금지 기간보다 자율관리규약에서 자체 규정한 개별 어종 및 업종의 조업금지 기간의 초과 비율을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회원 참여율(30%), 확대 일수(70%)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규약, 회의록, 활동일지 (2개 이상 체크)
2. 실시 여부: ‘예’, ‘아니오’ 중 체크
3. 회원 참여율(배점 30%):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조업일수 단축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4. 확대 일수(배점 70%): 평가기간(상 · 하반기) 내 실시한 해당 항목에 √체크
ㅇ 공동체가 설정한 조업금지기간에서 수산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조업금지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가하며, 또한 공동체가 정한 수산관계 법령 외의 자체설정 대상어종은 1종 당 60일 이상인 경우 배점비율 20%, 최대 2개까지만 인정함
* 체크 방식은 공통사항②를 참고하되, 수산관계법령有, 수산관계법령無 중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실적 입력, 수산관계법령에서 정한 조업금지대상 어종 및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기간을 합산함(배점 70%을 넘는 경우에도 만점인 70%까지만 인정)
* 배점비율(상세, 수산관계법령有)
<table>
<tr><th>자체설정 조업금지기간 확대일수</th><th>배점 70%</th></tr>
<tr><td>60일 이상</td><td>배점비율 100%</td></tr>
<tr><td>40~60일 미만</td><td>배점비율 75%</td></tr>
<tr><td>20~40일 미만</td><td>배점비율 50%</td></tr>
<tr><td>1~20일 미만</td><td>배점비율 25%</td></tr>
</table>
* 배점비율(상세, 수산관계법령無)
<table>
<tr><th>자체설정 조업금지기간 설정 어종 수</th><th>배점 70%</th></tr>
<tr><td>2개 이상</td><td>배점비율 40%</td></tr>
<tr><td>1개</td><td>배점비율 20%</td></tr>
</table>
</td></tr>
</table>

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다. 조업금지기간 확대	마 을 어 선 내수면 복 합	□ 예시 ㅇ 확대 일수(70%) - 수산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보다 초과(A어종 20일, B업종 30일) 규정하고 - 수산관계법령에 없는 어종을 공동체가 자체 규정(D어종 60일, E어종 120일)하여 준수하는 경우 ⇒ {[수산관계법령有 40~60일 미만(75%)×배점70%]+[수산관계법령無 2개 이상(40%)×배점70%]}
라. 어장휴식 실시	마 을 양 식 복 합	□ 용어의 정의 ㅇ '어장휴식년제'란 공동체(마을, 양식) 대상어장중 자원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체 어장을 일정 기간(1년 이상) 휴식하는 것을 말하며, 윤번제로 휴식하는 것을 포함함 □ 지표설명 ㅇ 전체 대상어장 면적 중 어장휴식 실시면적의 비율에 회원 참여율을 반영하여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실시율(100%)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규약,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2개 이상 체크) 2. 실시 여부: '예', '아니오' 중 체크 3. 실시율(배점 100%): 평가 기간(상・하반기)중 자율관리 대상 어장 중 전체 어장면적과 어장 휴식면적(윤번제 등)을 각각 입력하고, 공동체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각각 입력하여 참여 인원당 어장휴식 실시면적의 비율로 평가함 *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실적 입력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어장휴식년제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 예시 ㅇ 실시율 - A공동체 60명 중 30명이 상반기에 전체 어장 300ha 중 100ha의 어장휴식을 실시한 경우 ⇒ [어장면적(100ha/300ha)]×[회원 참여율(30명/60명)]×배점100%

<table>
<tr><th>평가항목</th><th>유형</th><th>평 가 지 침</th></tr>
<tr><td>마. TAC 등
생산량 규제</td><td>마 을
어 선
내수면
복 합</td><td>
□ 용어의 정의
ㅇ ‘생산량 조절’이란 자원보호 및 생산량 과다로 인한 어가 하락 등의 이유로 자율관리규약에서 규정한 대상 품목에 대하여 공동체 어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함
ㅇ ‘총허용어획량(TAC)’라 함은 특정 어종에 대해 최대 어획 및 포획을 할 수 있는 양을 정하여 조업하는 것을 말함
□ 지표설명
ㅇ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TAC 물량과, 공동체에서 자체 설정한 TAC 물량의 이행률을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회원 참여율(30%), TAC 이행률(70%)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규약, 회의록, 활동일지 (2개 이상 체크)
2. 실시 여부: ‘예’, ‘아니오’ 중 체크
3. 회원 참여율(배점 30%):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생산량 조절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4. TAC 이행률(배점 70%): 평가 기간(상·하반기) 중 실시한 해당 항목에 √체크
ㅇ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어종별·업종별 TAC 물량과 실제 소진한 물량의 이행률로 평가하며, 또한 공동체가 자체 설정한 어종별·업종별 TAC 물량과 실제 소진한 물량의 이행률은 배점비율을 달리하여 50%까지만 인정함
* 체크 방식은 공통사항②를 참고하되, 정부 부여 TAC, 공동체 자체 설정 TAC 중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부여받은(설정한) TAC 어종이 2개 이상이거나 회원별로 TAC 물량을 부여받은(설정한) 경우 물량을 합산함(배점 70%을 넘는 경우에도 만점인 70%까지만 인정)
* 배점비율(상세, 정부 TAC)
<table>
<tr><th>구분</th><th>TAC 이행률</th><th>배점 70%</th></tr>
<tr><td rowspan="3">정부로부터 TAC 물량 부여</td><td>100% 이하</td><td>배점비율 100%</td></tr>
<tr><td>100%초과~110%이하</td><td>배점비율 80%</td></tr>
<tr><td>110%초과</td><td>배점비율 50%</td></tr>
</table>
* 배점비율(상세, 자체 TAC)
<table>
<tr><th>구분</th><th>TAC 이행률</th><th>배점 70%</th></tr>
<tr><td rowspan="3">자체 TAC 설정</td><td>100% 이하</td><td>배점비율 50%</td></tr>
<tr><td>100%초과~110%이하</td><td>배점비율 40%</td></tr>
<tr><td>110%초과</td><td>배점비율 30%</td></tr>
</table>
</td></tr>
</table>

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마. TAC 등 생산량 규제	마을어선 내수면 복합	□ 예시 ㅇ TAC 이행률(70%) - A공동체 회원들이 정부로부터 총 100톤의 '가' 어종의 TAC 물량을 받았으나 103톤을 어획함 - 또한, A공동체는 '나' 어종에 대해 자체적으로 TAC를 50톤 설정하여 48톤을 어획하고, - '다' 어종에 대해 자체적으로 TAC를 50톤 설정하여 60톤을 어획한 경우 ⇒ [정부TAC 100%초과~110%이하(80%)×배점70%)+[자체TAC 100%초과~110%이하(40%)×배점70%)]
2. 어장환경 조성사업 가. 투석, 해중림, 어소 등 산란장 조성	마을 내수면 복합	□ 용어의 정의 ㅇ '투석'이란, 마을어장 내 해조류 등의 자원조성을 위해 부착 기질로서 바위나 돌 등을 살포하는 것 ㅇ '모패장'이란, 마을어장 내 어장 일부를 구획하여 대상 생물의 일부 남은 양을 놓아두거나 모패를 살포한 장소 ㅇ '해조장'이란, 전복 양식 등에 먹이가 되는 해조류 시설 및 장소 ㅇ '채묘장'이란, 천연 종묘 생산의 한 과정으로서, 부유 생활기를 지나면 부착 생활기를 갖는 굴, 담치, 진주조개, 피조개, 가리비 및 멍게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부착 생활기로 들어갈 때 부착기를 넣어 그들을 부착시키거나, 또 부착력이 없는 바지락이나 대합 등 부유 생활기를 지난 다음 바닥에 침강할 때 거기에다 완류장치를 해주어 그들의 침강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설 및 장소 ㅇ '중간육성장'이란, 부화 자어 또는 어린 조개로부터 양성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묘를 사육하는 시설 및 장소 ㅇ '해중림'이란, 연안 해역에서 해조류가 번무하여 해조류 숲을 이루고 있는 곳을 의미 ㅇ '어소'라 함은 민물고기 산란장을 의미(내수면만 해당) ㅇ '어도'라 함은 민물고기의 이동 통로임(내수면만 해당) □ 지표설명 ㅇ 어장환경 조성사업 실시 여부와 조성 이후 사후관리 활동 여부를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어장환경 조성사업 실시(40%), 사후관리 활동 실시(60%)

<table>
<tr><th>평가항목</th><th>유형</th><th>평 가 지 침</th></tr>
<tr><td>가. 투석, 해중림, 어소 등 산란장 조성</td><td>마 을
내수면
복 합</td><td>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규약, 회의록, 사진,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수협 확인, 활동일지 (2개 이상 체크)

2. 실시 여부: ‘예’, ‘아니오’ 중 체크

3. 어장환경 조성사업 실시(배점 40%): 평가기간(상·하반기) 중 실시한 해당 항목(평가항목)에 √체크

* 체크방식은 공통사항 ②를 참조하되, 해당 항목이 복수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 어장환경 조성사업은 하나라도 실시한 경우 만점 부여(정부·공공기관 지원, 자부담 지출 등 확인)

4. 사후관리 활동 실시(배점 60%): 평가기간(상·하반기) 중 어장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한 구역을 ‘자율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규약 확인) 사후관리 활동을 실시한 해당 항목(평가항목)에 √체크

* 체크방식은 공통사항 ②를 참조하되, 해당 항목이 복수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 사후관리 활동은 항목별로 배점비율을 달리하여 인정(배점 60%를 넘는 경우에도 최대 60%까지만 인정)

* 배점비율(상세, 사후관리 활동)

<table>
<tr><th>구분</th><th>평가항목</th><th>배점 60%</th></tr>
<tr><td rowspan="4">사후관리 활동</td><td>‘자율보호구역’ 지정 홍보
(표지판·현수막 등 게재, 잡지, 기사 등)</td><td>배점비율 80%</td></tr>
<tr><td>조업 제한 기간 운영</td><td>배점비율 60%</td></tr>
<tr><td>특정어구 사용 금지 기간 운영</td><td>배점비율 60%</td></tr>
<tr><td>어장 청소</td><td>배점비율 60%</td></tr>
</table>

□ 예시

ㅇ 어장환경 조성사업 사후관리 활동 실시(60%)

- A공동체는 어장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한 구역을 ‘자율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자율보호구역’ 팻말(표지판)을 설치하고,

- 일정기간(3개월) 동안 조업 제한 기간을 운영한 경우

⇒ [‘자율보호구역’ 지정 홍보(80%)×배점60%]+[조업 제한 기간 운영(60%)×배점60%]

</td></tr>
</table>

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나. 바위닦기, 저질개선, 시비재살포 등 실시	마을양식복합	□ 용어의 정의 ㅇ ‘바위닦기’란 해조류 포자가 부착 기질에 착생이 쉽도록 부착 기질인 갯바위를 닦는 것을 의미함 ㅇ ‘저질개선’이란 객토(새 흙 넣기), 경운(간석지 같은 패류 양식장을 갈아 줌), 형망 등 바닥갈이로 인한 저질 개선을 의미 ㅇ ‘시비재’란 황산철과 규조토를 콘크리트 기질에 혼합하여 조제한 임상 제2철제로서 철의 기능을 이용하여 육상에서 비료를 시비하는 원리를 수중에 시비하여 서서히 철성분이 돌출되어 해조의 생육과 영양염 공급에 효과를 주는 바다 비료를 말함 □ 지표설명 ㅇ 전체 대상어장 면적 중 바위닦기, 저질개선, 시비재살포 등 실시면적의 비율에 회원 참여율을 반영하여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실시율(100%)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규약,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2개 이상 체크) 2. 실시 여부: ‘예’, ‘아니오’ 중 체크하고 해당 항목(평가항목)에 √체크 * 체크방식은 공통사항②를 참조하되, 바위닦기·저질개선·시비재살포를 모두 한 경우에는 모두 체크 3. 실시율(배점 100%): 평가기간(상·하반기) 내 자율관리 대상어장 중 전체 어장면적과 바위닦기, 저질개선, 시비재살포를 실시한 면적을 각각 입력하고, 공동체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각각 입력하여 참여 인원당 실시면적의 비율로 평가함 *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실적을 입력하되, 바위닦기, 저질개선, 시비재살포를 모두 하였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실적을 입력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바위닦기, 저질개선, 시비재살포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 예시 ㅇ 실시율 - A공동체는 어장 100ha 중 20ha에 대하여 공동체 현원 30명 중 10명이 바위닦기를 실시 - 어장 100ha 중 30ha에 대하여 공동체 현원 30명 중 10명이 저질개선을 실시한 경우 ⇒ {[실시면적합(20ha+30ha)/어장면적합(100ha+100ha)]×[회원참여율(20명/30명)]}×배점100%

<table>
<tr><th>평가항목</th><th>유형</th><th>평 가 지 침</th></tr>
<tr><td>다. 유해생물 구제
(외래어종, 생태계교란 생물)실시</td><td>공 통</td><td>
□ 용어의 정의
ㅇ ‘유해생물 구제’란, 불가사리·해파리뿐만 아니라 자율관리 대상에 해를 입히는 모든 생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며, 내수면은 외래 어종 구제를 말한다.
(ex, 미더덕 수하연에 부착한 물우렁쉥이, 진주담치 등)
ㅇ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에서 정한 동물(양서류, 파충류, 어류, 갑각류)을 말한다.
* 대표생물: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속, 블루길, 배스
ㅇ 해파리 민간모니터링 요원이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해파리 모니터링 요원을 말한다.
□ 지표설명
ㅇ 유해생물(외래 어종, 생태계교란 생물) 구제 중량, 해파리 모니터링 요원 참여 여부를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회원 참여율(30%), 구제 물량(70%)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규약, 회의록, 사진,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수협확인, 활동일지, 국립수산과학원 민간모니터링 요원 명단 (2개 이상 체크)
2. 실시 여부: ‘예’, ‘아니오’ 중 체크
3. 회원 참여율(배점 30%):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유해생물 구제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3. 구제 물량(배점 70%): 해당연도를 제외한 지난 3년간 평가기간(상반기/하반기 별) 내 구제 물량의 평균을 기준으로(기 평가 실적 자동 계산) 가·감 물량에 따라 배점비율을 달리하여 평가하며, 공동체 회원이 해파리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한 경우 배점비율을 50%로 산정하여 추가로 부여함(다만, 배점 70%을 넘는 경우 만점인 70%까지만 인정)
*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실적을 입력
* 배점비율(상세, 구제 물량)
<table>
<tr><th>지난 3년간 상반기/하반기 별 구제 물량 평균 대비</th><th>배점 70%</th></tr>
<tr><td>+10% 이상</td><td>배점비율 100%</td></tr>
<tr><td>+5% 이상 ~ +10% 미만</td><td>배점비율 95%</td></tr>
<tr><td>같거나 +5% 미만</td><td>배점비율 90%</td></tr>
<tr><td>-5% 미만</td><td>배점비율 80%</td></tr>
<tr><td>-5% 이상 ~ -20% 미만</td><td>배점비율 70%</td></tr>
<tr><td>-20% 이상</td><td>배점비율 60%</td></tr>
</table>
* 배점비율(상세, 해파리 모니터링 요원 참여)
<table>
<tr><th>해파리 모니터링 참여 여부</th><th>배점 70%</th></tr>
<tr><td>참여</td><td>배점비율 50%</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유형</th><th>평 가 지 침</th></tr>
<tr><td>다. 유해생물 구제
(외래어종, 생태계교란 생물)실시</td><td>공 통</td><td>□ 예시
ㅇ 구제 물량(70%)
- A공동체는 해당연도를 제외한 지난 3년간 상반기 유해생물 구제 물량의 평균이 50톤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46톤을 수거하였고,
- 공동체 회원 중 해파리 모니터링 참여 요원이 있는 경우
⇒ [-5% 이상~20% 미만(70%)×배점70%]+[해파리모니터링요원(50%)×배점70%]</td></tr>
<tr><td>라. 어장청소사업</td><td>공 통</td><td>□ 용어의 정의
ㅇ ‘해안청소’란, 어촌계 지선(支先: 해안선에 인접한 해역) 혹은 주 조업지, 항포구, 해안가, 선박 계류장 등에서 쓰레기 등을 수거(육지로 인양)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함
ㅇ ‘어장내 폐어구 수거’란, 어장내(수중 및 수면)의 스티로폼 부자, 폐어구 통발, 그물 등을 구성원 혹은 고용한 스킨스쿠버를 통해 수거(육지로 인양)하여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함
□ 지표설명
ㅇ 해안청소 횟수, 해안청소/폐어구 수거 중량, 폐어구 수거 대회 참여 실적을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회원 참여율(20%), 해안청소 횟수(20%), 해안청소/폐어구 수거 중량(60%)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규약,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기타관련 서류 (2개 이상 체크)
2. 실시 여부: ‘예’, ‘아니오’ 중 체크
3. 회원 참여율(배점 20%):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해안청소/폐어구 수거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4. 해안청소 횟수(20%): 평가기간(상·하반기) 내 해안청소 실시 횟수 입력
*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실적을 입력, 횟수에 따라 배점비율을 달리하여 인정하며, 분기별 2회를 만점 기준으로 설정
* 배점비율(상세)
<table>
<tr><th>해안청소 실시 횟수</th><th>배점 20%</th></tr>
<tr><td>4회 이상</td><td>배점비율 100%</td></tr>
<tr><td>3회</td><td>배점비율 75%</td></tr>
<tr><td>2회</td><td>배점비율 50%</td></tr>
<tr><td>1회</td><td>배점비율 25%</td></tr>
<tr><td>미실시</td><td>배점비율 0%</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유형</th><th>평 가 지 침</th></tr>
<tr><td>라. 어장청소사업</td><td>공 통</td><td>
5. 해안청소/폐어구 수거 중량(배점 60%): 해당연도를 제외한 지난 3년간 평가기간(상반기/하반기 별) 내 수거 중량의 평균을 기준으로(기 평가 실적 자동 계산) 가·감 중량에 따라 배점비율을 달리하여 평가하며, 공동체가 폐어구 수거 대회에 참여한 경우 배점비율의 50%를, 참여하여 수상까지 한 경우 배점비율의 100%를 추가로 부여함(다만, 배점 60%를 넘는 경우 만점인 60%까지만 인정)
*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실적을 입력
* 배점비율(상세, 수거 중량)
<table>
<tr><th>지난 3년간 상반기/하반기 별 수거 중량 평균 대비</th><th>배점 60%</th></tr>
<tr><td>+10% 이상</td><td>배점비율 100%</td></tr>
<tr><td>+5% 이상~10% 미만</td><td>배점비율 95%</td></tr>
<tr><td>같거나 +5% 미만</td><td>배점비율 90%</td></tr>
<tr><td>-5% 미만</td><td>배점비율 80%</td></tr>
<tr><td>-5% 이상~20% 미만</td><td>배점비율 70%</td></tr>
<tr><td>-20% 이상</td><td>배점비율 60%</td></tr>
</table>
* 배점비율(상세, 폐어구 수거 대회 참여)
<table>
<tr><th>폐어구 수거 대회 참여 여부</th><th>배점 60%</th></tr>
<tr><td>참여+수상실적</td><td>배점비율 100%</td></tr>
<tr><td>참여</td><td>배점비율 50%</td></tr>
</table>
□ 예시
ㅇ 해안청소/폐어구 수거 중량(60%)
- A공동체는 해당연도를 제외한 지난 3년간 상반기 해안청소/폐어구 수거 중량의 평균이 50톤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10톤을 수거하였으나,
- 폐어구 수거 대회에 참여한 경우
⇒ [-20%이상(60%)×배점60%]+[폐어구 수거대회 참여(50%)×배점60%]
</td></tr>
<tr><td>마. 친환경 수산육성</td><td>양 식
어 선
복 합</td><td>
□ 용어의 정의
ㅇ ‘친환경수산육성’이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 및 수산생물의 서식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어구, 기자재, 약품 사용 등 활동 정도를 말한다.
- 친환경 에너지 절감·보급 장비 설치·사용(히트펌프, 매연저감 장치 등)
- 친환경 배합사료·약품 구입·사용
- 친환경 어구 구입·사용(생분해성 어구, 고효율등(LED), 인증부표 등)
- 친환경 양식 적용(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용수청화, 아쿠아포닉스 등)
- 기타 친환경수산육성과 관련된 활동
□ 지표설명
ㅇ 친환경수산육성 활동 실적을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회원 참여율(30%), 친환경수산육성 활동(70%)
</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유형</th><th>평 가 지 침</th></tr>
<tr><td>마. 친환경 수산 육성</td><td>양 식
어 선
복 합</td><td>□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규약,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기타관련 서류 (2개 이상 체크)
2. 실시 여부: ‘예’, ‘아니오’ 중 체크
3. 회원 참여율(배점 30%):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친환경수산육성 활동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4. 친환경수산육성을 위한 활동 정도(배점 70%): 평가기간(상·하반기)내 실시 해당 항목(평가항목)에 √체크
* 체크방식은 공통사항 ②를 참조하되, 해당 항목이 복수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 항목별로 실시횟수를 1회로 인정하고, 활동 횟수별로 배점비율을 달리하여 평가(정부·공공기관 지원, 자부담 지출 등 확인)
* 이전 상·하반기에도 계속 도입·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사진 증빙 등 확인)
* 배점비율(상세)
<table>
<tr><th>친환경수산육성 활동</th><th>배점 70%</th></tr>
<tr><td>4회 이상</td><td>배점비율 100%</td></tr>
<tr><td>3회</td><td>배점비율 75%</td></tr>
<tr><td>2회</td><td>배점비율 50%</td></tr>
<tr><td>1회</td><td>배점비율 25%</td></tr>
</table></td></tr>
<tr><td>3. 자원조성사업

가. 수산종자 방류 또는 이식 실시</td><td>마 을
어 선
내수면
복 합</td><td>□ 용어의 정의
ㅇ ‘수산종자 방류’란, 일정한 크기의 치어(어린 물고기) 및 어린 조개 등을 자율관리 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마을어장 및 주 조업지 등에 방류하는 것을 말함
*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에 준하여 실시
ㅇ ‘수산종자 이식’이란, 일정한 크기로 성장한 종자(어린 물고기, 어린 조개 등)를 일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키우는 것을 말함
* 방류를 하기 전에 일정한 장소로 이동시켜 성장 및 방류
□ 지표설명
ㅇ 방류 또는 이식한 수산종자의 품종 수와 횟수를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수산종자 방류 또는 이식 품종 수(50%), 수산종자 방류 또는 이식 실시 횟수(50%)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규약, 회의록, 사진,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활동일지(2개 이상 체크)
2. 실시 여부: ‘예’, ‘아니오’ 중 체크</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유형</th><th>평 가 지 침</th></tr>
<tr><td>가. 수산종자 방류 또는 이식 실시</td><td>마을어선 내수면 복합</td><td>3. 수산종자 방류 또는 이식 품종 수(배점 50%): 평가기간(상·하반기) 내 수산종자 방류 또는 이식한 품종 수를 각각 입력
* 체크방식은 공통사항 ②를 참조하되, 해당 항목이 복수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작성하고 합산으로 평가하며 배점비율을 달리하여 인정
* 배점비율(상세)
<table>
<tr><td>수산종자 방류 또는 이식 품종 수</td><td>배점 50%</td></tr>
<tr><td>2종 이상</td><td>배점비율 100%</td></tr>
<tr><td>1종</td><td>배점비율 80%</td></tr>
</table>
4. 수산종자 방류 또는 이식 실시 횟수(배점 50%): 평가기간(상·하반기) 내 수산종자 방류 또는 이식 실시 횟수를 각각 입력
* 체크방식은 공통사항 ②를 참조하되, 해당 항목이 복수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작성하고 합산으로 평가하며 배점비율을 달리하여 인정
* 배점비율(상세)
<table>
<tr><td>수산종자 방류 또는 이식 횟수</td><td>배점 50%</td></tr>
<tr><td>2회 이상</td><td>배점비율 100%</td></tr>
<tr><td>1회</td><td>배점비율 80%</td></tr>
</table>
□ 예시
ㅇ A공동체는 상반기에 ‘가’ 품종을 1회 종자방류를 실시하였으며, ‘나’ 품종을 2회 이식 실시한 경우
⇒ [2종 이상(100%)×배점50%]+[2회 이상(100%)×배점50%]</td></tr>
<tr><td>4. 수익 확대 사업 추진

가. 공동판매, 계통출하 실시</td><td>공 통</td><td>□ 용어의 정의
ㅇ ‘공동판매’란, 공동체 어장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공동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수협의 계통출하도 이에 포함됨.
* 공동체에서 일괄적으로 공동계약 판매한 비계통 판매도 포함
□ 지표설명
ㅇ 공동판매(계통출하) 실적을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회원 참여율(30%), 공동판매(계통출하) 실적률(70%)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수협 확인, 활동일지 (2개 이상 체크)
2. 실시여부: ‘예’, ‘아니오’ 중 체크
2. 회원 참여율(배점 30%):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공동판매(계통출하) 실시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3. 실적률(배점 70%):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중 평가기간(상・하반기) 중 전체 생산액과 공동 판매액(계통출하액)을 각각 입력하고, 전체 판매액에 대한 공동 판매액(계통출하액)의 비율로 평가함
*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실적 입력</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유형</th><th>평 가 지 침</th></tr>
<tr><td>나. 생산물 판매망 구축</td><td>공 통</td><td>
□ 용어의 정의
ㅇ ‘판매망 구축’이란, 공동체가 생산한 수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직판장, 간이판매장 등)을 말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판매망도 포함한다.
ㅇ ‘판매 실적’이란, 공동체가 구축한 판매망(직판장, 간이판매장,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된 실적을 말한다.
□ 지표설명
ㅇ 판매망 구축 실적과, 구축된 판매망을 통한 판매 실적을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회원 참여율(30%), 구축 여부(30%), 판매 실적(40%)
□ 평가방법
1. 규약, 회의록, 사진, 수협확인, 활동일지 (2개 이상 체크)
2. 회원 참여율(배점 30%):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생산물 판매망 구축에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3. 구축 여부(배점 30%): 구축 여부를 ‘예’, ‘아니오’로 체크하고 구축내용을 추가 입력사항에 입력해야 배점이 부여됨
* 이전 상・하반기에 설치한 간이판매장 및 인터넷 판매망을 해당 상・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
4. 판매 실적(배점 40%): 해당연도를 제외한 지난 3년간 평가기간(상반기/하반기 별) 내 판매 실적의 평균을 기준으로(기 평가 실적 자동 계산) 가·감 금액에 따라 배점비율을 달리하여 평가
* 공통사항④을 참조하여 실적을 입력
* 배점비율(상세)
<table>
<tr><th>지난 3년간 상반기/하반기 별 판매 실적 평균 대비</th><th>배점 40%</th></tr>
<tr><td>+10% 이상</td><td>배점비율 100%</td></tr>
<tr><td>+5% 이상~10% 미만</td><td>배점비율 95%</td></tr>
<tr><td>같거나 +5% 미만</td><td>배점비율 90%</td></tr>
<tr><td>-5% 미만</td><td>배점비율 80%</td></tr>
<tr><td>-5% 이상~20% 미만</td><td>배점비율 70%</td></tr>
<tr><td>-20% 이상</td><td>배점비율 60%</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유형</th><th>평 가 지 침</th></tr>
<tr><td>다. 자체상품 품질 개선</td><td>공 통</td><td>□ 용어의 정의
ㅇ ‘자체상품 품질개선’이라 함은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어획 및 채취에서 판매할 때까지 선도유지, 가치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을 말함
* 공동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활용한 자체 가공상품 개발, 선도유지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포장규격 변경, 상품 브랜드화, 공동체 생산 수산물 판매 상품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표기
□ 지표설명
ㅇ ‘자체상품 품질개선’ 활동 실적을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자체상품 품질개선 실시 여부(100%)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규약, 회의록, 사진,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활동일지 (2개 이상 체크)
2. 실시 여부(배점 100%): 실시한 여부를 ‘예’, ‘아니오’로 체크하고 활동 내용을 추가 입력사항에 입력해야 배점이 부여됨
* 이전 상・하반기에 개선한 것을 당해 상・하반기에도 계속 도입·운영하는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td></tr>
<tr><td>5. 자율관리 공동체 교육

가. 공동체 주관 교육</td><td>공 통</td><td>□ 용어의 정의
ㅇ ‘공동체 주관 교육’이란,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주관하여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위원장 또는 구성원이 직접 교육하거나 혹은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여 실시하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의식교육을 말함
□ 지표설명
ㅇ ‘공동체 주관 교육’ 실적을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회원 참여율(30%), 공동체 주관 교육 실시 횟수(70%)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2개 이상 체크)
2. 실시 여부: ‘예’, ‘아니오’ 중 체크
* ‘공동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체크
3. 회원 참여율(배점 30%):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공동체가 주관하는 어업인 의식교육에 참여한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4. 교육 실시횟수(배점 70%): 반기 내 누적 교육 실시횟수 입력
*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실적 입력, 횟수에 따라 배점비율을 달리하여 인정하며, 분기별 1회 실시를 만점 기준으로 설정
* 배점비율(상세)
<table>
<tr><th>공동체 주관 교육 실시 횟수</th><th>배점 70%</th></tr>
<tr><td>2회 이상</td><td>배점비율 100%</td></tr>
<tr><td>1회</td><td>배점비율 50%</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유형</th><th>평 가 지 침</th></tr>
<tr><td>나.행정기관 등 주관 교육 참여</td><td>공 통</td><td>
□ 용어의 정의
ㅇ 국가, 지자체, 해경, 수협, 컨설턴트 등 공동체 자체 이외 기관이나 단체에서 매 건마다 1시간 이상 실시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교육 참여도를 말하며, 특히 담당공무원이 업무상 출장하여 수행한 교육도 포함한다.
* 여기에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물론 공동체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포함한다.
□ 지표설명
ㅇ ‘행정기관 등 주관 교육 참여’ 실적을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행정기관 등 주관 교육 참여 횟수(100%)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행정관청 확인(시군구), 수협 확인, 기타 관련서류(2개 이상 체크)
2. 참여 여부: ‘예’, ‘아니오’ 중 체크
3. 교육 참여횟수(배점 100%): 반기 내 누적 교육 참여횟수와 교육 주관 기관을 입력
*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실적 입력, 횟수에 따라 배점비율을 달리하여 인정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참여를 만점 기준으로 설정
* 1건 당 2명 이상이 교육에 참여하였더라도 건당 1회로 계산함
* 배점비율(상세)
<table>
<tr><th>행정기관 등 주관 교육 참여 횟수</th><th>배점 100%</th></tr>
<tr><td>2회 이상</td><td>배점비율 100%</td></tr>
<tr><td>1회</td><td>배점비율 50%</td></tr>
</table>
□ 예시
ㅇ 상반기에 A공동체 위원장이 수협에서 개최하는 교육에 2회 참여하고, ㅇㅇ시 담당공무원이 A공동체 구성원 30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교육을 1회 실시한 경우
⇒ 2회 이상(100%)×배점100%
</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유형</th><th>평 가 지 침</th></tr>
<tr><td>6. 어선안전관리

가. 어선안전 운항 노력</td><td>어선 복합</td><td>□ 용어의 정의
ㅇ ‘어선안전운항 노력’이란 어선 안전 설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등 안전점검 실시를 말함
□ 지표설명
ㅇ 회원 참여율, 안전점검 실적을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회원 참여율(30%), 안전점검 실적(70%)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2개 이상 체크)
2. 실시 여부: ‘예’, ‘아니오’ 중 체크
3. 회원 참여율(배점 30%): 현원 수와 참여 수를 기입
* 공통사항③을 참조하여 인원수를 산정하되, 참여 수는 어선안전 운항 노력 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합계함
3. 안전점검 실적(배점 70%): 반기 내 안전점검 실시 횟수 입력 및 점검한 어선 안전 설비 항목에 체크
* 어선 안전 설비 4개 항목(소방설비, 구명설비, 전기설비, 항해·무선설비)이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점수 미부여(활동일지 및 구축된 설비 사진 확인)
* 공통사항④를 참조하여 실적 입력, 횟수에 따라 배점비율을 달리하여 인정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실시를 만점 기준으로 설정
* 배점비율(상세)
<table>
<tr><th>어선안전 점검 실시 횟수</th><th>배점 70%</th></tr>
<tr><td>2회 이상</td><td>배점비율 100%</td></tr>
<tr><td>1회</td><td>배점비율 50%</td></tr>
</table></td></tr>
</table>

평가항목	유형	평 가 지 침
Ⅱ. 참여도		연 1회 평가
1. 공동체 참여자수	공 통	□ 용어의 정의 ㅇ '공동체 참여자수'란, 교육, 청소 등 공동체 참여율이 있는 항목에서 참여율을 산출한 것을 말함 * 참여율 항목: 어획능력 삭감 노력/포획·채취 체장 제한/조업금지기간 확대/총허용어획량(TAC) 등 생산량 규제/유해생물 구제/어장청소 사업/친환경 수산 육성/공통판매, 계통출하 실시/생산물 판매망 구축/공동체 주관교육/어선안전 운항 노력 □ 지표설명 ㅇ 공동체 회원 참여율이 있는 항목 중 3개를 선택하여 참여율의 평균을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공동체 참여자수(100%)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규약,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기타관련 서류 (2개 이상 체크) 2. 참여율 항목 선택: 점수 산정에 포함할 항목 3개 √체크 3. 공동체 참여자수(100%): 체크한 활동의 회원 참여율의 평균을 점수로 산정 □ 예시 ㅇ A공동체는 회원 참여율이 높은 3가지 항목(TAC 등 생산량 규제 90%, 어장청소 사업 85%, 공동체 주관교육 70%)을 선택한 경우 ⇒ {[(90+85+70)/3] + 10} * 100%

<table>
<tr><th>평가항목</th><th>유형</th><th>평 가 지 침</th></tr>
<tr><td>Ⅲ. 성과도</td><td></td><td>연 1회 평가</td></tr>
<tr><td>1.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자담 투자액 포함)</td><td>공 통</td><td>
□ 용어의 정의
ㅇ ‘자체자금 적립액’이란 순수 현금의 공동체 적립금을 말함
□ 지표설명
ㅇ 해당연도를 제외한 지난 3년간 ‘자체자금 적립액’ 평균금액 대비 해당연도 ‘자체자금 적립액’의 증가율을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100%)
* 자체자금 증가율= (해당연도 적립액/3년 평균 적립액)×배점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회의록,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활동일지 (2개 이상 체크)
2. 적립 여부: 해당연도 말 기준으로 ‘예’, ‘아니오’ 중 √ 체크
3.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배점 100%): 해당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회계장부상의 자체자금 적립액 평균과 해당연도 1년간의 자체자금 적립액을 각각 입력
* 해당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자체자금 적립액의 평균을 기준으로(기 평가 실적 자동 계산) 해당연도 1년간의 자체자금 적립액을 배점비율을 달리하여 평가하며, 기 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직접 입력하거나 공란
* 배점비율(상세, 자체자금 적립액 증가율)
<table>
<tr><th>지난 3년간 자체자금 적립액 평균 대비</th><th>배점 100%</th></tr>
<tr><td>같거나 +인 경우</td><td>배점비율 100%</td></tr>
<tr><td>-10% 미만</td><td>배점비율 80%</td></tr>
<tr><td>-10% 이상 ~ -20% 미만</td><td>배점비율 70%</td></tr>
<tr><td>-20% 이상</td><td>배점비율 60%</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유형</th><th>평 가 지 침</th></tr>
<tr><td>2. 공동체 연 수입액 증가율</td><td>공통</td><td>
□ 용어의 정의
ㅇ ‘수입액’이란, 공동체가 수행한 자율관리어업 어장 내에서 회원들이 수입한 금액을 말하며, 자율관리어업 이외의 수입액은 제외함. 단, 자율관리어업과 관련된 관광수입(숙박, 식사 등)은 포함함.
ㅇ ‘연 수입액’이란, 해당 연도 말 현재 공동체 회계장부상 연간 수입액을 말함
□ 지표설명
ㅇ 해당연도를 제외한 지난 3년간 ‘공동체 연 수입액’의 평균금액 대비 해당연도 ‘공동체 연 수입액’의 증가율을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공동체 연 수입액 증가율(100%)
* 수입액증가율= (해당연도 수입액/3년 평균수입액)×배점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회의록, 증빙서류(장부, 통장, 영수증), 활동일지 (2개 이상 체크)
2. 공동체 연 수입액 증가율(배점 100%): 해당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회계장부상의 공동체 연 수입액 평균과 해당연도 1년간의 공동체 연 수입액을 각각 입력
* 해당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간 공동체 연 수입액의 평균을 기준으로(기 평가 실적 잘오 계산) 해당연도 1년간의 공동체 연 수입액을 배점비율을 달리하여 평가하며, 기 평가 실적이 없는 경우 직접 입력하거나 공란
* 배점비율(상세, 공동체 연 수입액 증가율)
<table>
<tr><td>지난 3년간 공동체 연 수입액 평균 대비</td><td>배점 100%</td></tr>
<tr><td>같거나 +인 경우</td><td>배점비율 100%</td></tr>
<tr><td>-10% 미만</td><td>배점비율 80%</td></tr>
<tr><td>-10% 이상 ~ -20% 미만</td><td>배점비율 70%</td></tr>
<tr><td>-20% 이상</td><td>배점비율 60%</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유형</th><th>평 가 지 침</th></tr>
<tr><td>Ⅳ. 지속도</td><td></td><td>연 1회 평가</td></tr>
<tr><td>1. 귀어업인 구성원수</td><td>공 통</td><td>□ 용어의 정의
ㅇ ‘귀어업인’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촌지역을 이주한 후 전입신고 한 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지표설명
ㅇ 공동체 구성원으로 포함시킨 귀어업인 수를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귀어업인 수(100%)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규약,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전입신고 및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관련 서류 (2개 이상 체크)
2. 귀어업인 포함 여부: 평가기간 내 귀어업인 공동체 포함 여부를 ‘예, ’아니오‘ 중 √체크
3. 귀어업인 수(배점 100%): 평가기간 내 공동체 회원으로 포함시킨 귀어업인 수를 기입하되, 배점비율을 달리하여 평가
* 배점비율(상세)
<table>
<tr><th>귀어업인 수</th><th>배점 100%</th></tr>
<tr><td>2명 이상</td><td>배점비율 100%</td></tr>
<tr><td>1명</td><td>배점비율 50%</td></tr>
</table></td></tr>
<tr><td>2. 구성원의 수산관계 법령 위반</td><td>공 통</td><td>□ 용어의 정의
ㅇ ’구성원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이란 공동체 구성원이 「어선법」,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말함
□ 지표설명
ㅇ 공동체 구성원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를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행정처분건수(100%)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행정처분대장, 과태료, 과징금, 부과대장 등 기록
2. 평가대상: 공동체 구성원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
3. 실적계산: 행정처분 건수(어업정지, 과태료, 과징금 등) 확인
* 배점비율(상세, 행정처분 건수)
<table>
<tr><th>행정처분 건수</th><th>배점 100%</th></tr>
<tr><td>해당 없음</td><td>배점비율 100%</td></tr>
<tr><td>1건</td><td>배점비율 75%</td></tr>
<tr><td>2~4건</td><td>배점비율 50%</td></tr>
<tr><td>5건 이상</td><td>배점비율 0%</td></tr>
</table>
4. 평가시스템 입력: ‘행정처분 건수’를 입력</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유형</th><th>평 가 지 침</th></tr>
<tr><td>2. 구성원의 수산관계법령 위반</td><td>공 통</td><td>□ 예시
ㅇ 공동체구성원 1인이 해당 연도에 행정처분을 3회 받았을 경우 행정처분 건수는 3건이 됨
⇒ 50%×배점</td></tr>
<tr><td>3. 갈등 및 분쟁 해소 여부</td><td>공 통</td><td>□ 용어의 정의
ㅇ ’분쟁’이란 업종간, 다른 어업간의 조업구역·어구분쟁, 마을어업과 양식어업간 분쟁 등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소송) 등을 포함함
□ 지표설명
ㅇ 자율관리 공동체 구성원간 또는 인근 지역 어업인간의 어장 이용을 둘러싼 분쟁 발생 여부와 이에 대한 해결 여부를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분쟁 해결 실적(100%)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민원서류, 언론보도 내용 등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사실관계 확인 출장복명서
2. 분쟁 여부: 공동체 내 또는 인근 어업인간 분쟁 발생 여부 ‘예’, ‘아니오’ 중 √체크
3. 분쟁 해결 실적(배점 100%): 해당 항목에 체크, 배점비율을 달리하여 평가
* 배점비율(상세)
<table>
<tr><th>분쟁 해결 실적</th><th>배점 100%</th></tr>
<tr><td>분쟁 발생 시 자체적 또는 자율조정협의회, 시군구, 시도,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해소 시</td><td>배점비율 100%</td></tr>
<tr><td>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td><td>배점비율 50%</td></tr>
<tr><td>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미해소</td><td>배점비율 0%</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유형</th><th>평 가 지 침</th></tr>
<tr><td>Ⅴ. 파급도</td><td></td><td>연 1회 평가</td></tr>
<tr><td>1. 견학장소 제공 또는 출강 여부 등</td><td>공 통</td><td>
□ 용어의 정의
ㅇ ‘견학장소 제공’이란, 다른 공동체 또는 어촌계 및 수산단체 소속 구성원(직원) 5명 이상이 해당 공동체의 우수사례 등을 견학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을 말함
ㅇ ‘우수사례 발표(출강)’란, 해당 공동체의 우수사례를 전국대회를 포함한 각 기관(단체, 협회 포함) 주관의 집합 및 현장교육(토론회 포함)시 발표하는 것을 말함
□ 지표설명
ㅇ공동체의 견학장소 제공 및 우수사례 발표 횟수를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견학장소 제공(50%), 우수사례 발표(50%)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2개 이상 체크)
2. 견학장소 제공(배점 50%): 평가 해당 연도 중에 견학장소 제공 실적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를 √체크하고, 그 횟수를 해당란에 입력
* 배점비율(상세)
<table>
<tr><th>견학장소 제공 횟수</th><th>배점 50%</th></tr>
<tr><td>4회 이상</td><td>배점비율 100%</td></tr>
<tr><td>3회</td><td>배점비율 75%</td></tr>
<tr><td>2회</td><td>배점비율 50%</td></tr>
<tr><td>1회</td><td>배점비율 25%</td></tr>
</table>
3. 우수사례 발표(출강)(배점 50%): 평가 해당 연도 중에 우수사례 발표 또는 출강실적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를 체크하고, 그 횟수를 해당란에 입력
* 배점비율(상세)
<table>
<tr><th>우수사례 발표 횟수</th><th>배점 50%</th></tr>
<tr><td>4회 이상</td><td>배점비율 100%</td></tr>
<tr><td>3회</td><td>배점비율 75%</td></tr>
<tr><td>2회</td><td>배점비율 50%</td></tr>
<tr><td>1회</td><td>배점비율 25%</td></tr>
</table>
□ 예시
ㅇ A공동체가 견학장소 제공 3회, 우수사례 발표(출강) 2회를 한 경우 ⇒ [3회(75%)×배점50%]+[2회(50%)× 배점50%]
</td></tr>
</table>

<table>
<tr><th>평가항목</th><th>유형</th><th>평 가 지 침</th></tr>
<tr><td>Ⅴ. 파급도</td><td></td><td>연 1회 평가</td></tr>
<tr><td>2. 공동체 홍보</td><td>공 통</td><td>
□ 용어의 정의
ㅇ ‘홍보활동’이란, 공동체가 자율관리 활동에 대하여 언론(TV, 신문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공동체명으로 규약에 규정된 자율관리어업 활동내용을 현수막 또는 입간판으로 1주일 이상 홍보 또는 유인물로 제작·배포하는 것을 말함
□ 지표설명
ㅇ 언론홍보 및 자체홍보 실시횟수를 평가점수로 산정
* 배점(100%): 언론홍보 실시횟수(50%), 자체홍보 실시횟수(50%)
□ 평가방법
1. 확인서류 체크: 회의록, 사진, 활동일지, 언론매체 보도 사본(2개 이상 체크)
2. 언론홍보 실시횟수(배점 50%): 연간 누적 홍보 실적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체크, 그 횟수를 해당란에 입력
* 배점비율(상세)
<table>
<tr><th>언론홍보 실시횟수</th><th>배점 50%</th></tr>
<tr><td>4회 이상</td><td>배점비율 100%</td></tr>
<tr><td>3회</td><td>배점비율 75%</td></tr>
<tr><td>2회</td><td>배점비율 50%</td></tr>
<tr><td>1회</td><td>배점비율 25%</td></tr>
</table>
3. 자체홍보 실시횟수(배점 50%): 연간 누적 홍보 실적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체크, 그 횟수를 해당란에 입력
* 배점비율(상세)
<table>
<tr><th>자체홍보 실시횟수</th><th>배점 50%</th></tr>
<tr><td>4회 이상</td><td>배점비율 100%</td></tr>
<tr><td>3회</td><td>배점비율 75%</td></tr>
<tr><td>2회</td><td>배점비율 50%</td></tr>
<tr><td>1회</td><td>배점비율 25%</td></tr>
</table>
□ 예시
ㅇ A공동체가 언론홍보를 2회, 자체홍보를 3회 실시한 경우
⇒ [2회(50%)×배점50%]+[3회(75%)×배점50%]
</td></tr>
</table>

<붙임 1>

내수면 어장관리 규약(안)

20 . .

ㅇ ㅇ 내수면어업계

(ㅇ ㅇ 자율관리공동체)

○○ 내수면 어업계 어장관리 규약

제정 20 년 월 일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어장을 효율적으로 보전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장의 환경을 보전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내수면 어장관리에 필요한 규약을 정함으로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내수면 어업계 계원이나 내수면 어업계에서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받은 어업구역(이하 '어장'이라 함)을 적용한다.

② 본 규약은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내수면 어장관리 규약 준수 각서를 제출한 공동체 회원에게 적용한다.

③ 수산관계 법령 및 각종 규정, 내수면 어업계 정관, 자율관리어업 규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장에 관한 것은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어장표시) 내수면 어업계원이 허가받은 어업구역에 어장 표시를 하여 자기 구역을 표시토록 해야 한다.

제4조(어장구역 준수) 계원은 허가받은 어업구역 안에서 조업해야 하며, 자기 어업구역을 이탈하거나 과점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어선관리) ① 어업에는 등록된 어선을 사용해야 하며, 어선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고, 방치된 어선이 있을 때는 내수면 어업계장에게 신고하여 소유자를 찾아 폐선 조치한다.

② 어선은 조업 시에만 사용하고, 어선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 안 된다.

제6조(어장환경 개선) ① 지속적인 어장 생산성 유지에 필요한 서식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장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1. 매월 1회 이상 어장청소 실시
2. 반기별 1회 이상 폐어구 및 불법어구 수거 실시
3. 반기별 1회 이상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블루길, 큰입베스 등의 유해어종 구제 실시
4. 기타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7조(어업의 시기 및 사용어구) ① 어업의 시기는 ○월부터 ○월까지로 하며, 일몰 후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② 어구의 사용은 허가받은 어구 종류로만 조업을 하며, 폐어구는 어업구역이나 주변에 방치하지 않는다.

제8조(어구실명제 표시 설치) ① 내수면 어업계원은 각망 등 정치성 어구(유자망 포함)를 설치할 시는 어구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구실명제 표시를 해야 한다.

② 어구의 그물코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한 어구를 사용한다.

제9조(자원보호) ① 자원보호를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치어 방류 시 방류지 근처 어구를 철수한다.

② 시장, 군수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 요청이 있을 시에는 적극 협조한다.

제10조(기타) ①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 군수가 본 내수면 어장관리규약 준수 여부 확인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각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상기 본인은 00내수면 자율관리 공동체 사업을 함에 있어 회원으로서 내수면 어장관리규약을 엄격히 준수하여 절대로 위반하지 않으며,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각 서 인:　　(인)

00 내수면어업 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귀하

<붙임 2>

평가 결과표 제출

□ 평가기관(제출기관):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 수협 및 내수면평가협의체

□ 평가대상 공동체수(합계): ○○개 공동체

공동체명	①자율관리어업 추진정도	②대외활동 및 주변 파급	③위원장 리더십 및 회원간 결속력	④협의 평가	총점
00 공동체					
00 공동체					
00 공동체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지침서에 근거하여 20 년도 자율관리어업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표를 상기 내용과 같이 제출하오니, 전산 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장: OOO (인)

평가위원장: OOO (인)

평가위원: OOO (인)

평가위원: OOO (인)

* 모든 평가위원이 서명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수협중앙회, 평가위원회 사무국 귀하